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14.01.15. 제03호
(일부개정) 2014.04.28. 제16호
(일부개정) 2014.09.04. 제21호
(일부개정) 2015.03.23. 제23호
(일부개정) 2015.10.23. 제24호
(일부개정) 2016.01.12. 제28호
(일부개정) 2016.03.15. 제31호
(일부개정) 2016.09.07. 제38호
(일부개정) 2016.11.22. 제47호
(일부개정) 2017.03.28. 제49호
(일부개정) 2018.02.05. 제58호
(일부개정) 2018.08.06. 제62호
(일부개정) 2018.11.22. 제65호
(일부개정) 2019.09.20. 제70호
(일부개정) 2019.12.30. 제79호
(일부개정) 2020.03.19. 제83호
(일부개정) 2020.08.27. 제89호
(일부개정) 2021.06.11. 제102호
(일부개정) 2021.12.16. 제108호
(일부개정) 2022.01.17. 제115호
(일부개정) 2022.05.30. 제123호
(일부개정) 2022.10.06. 제129호
(일부개정) 2022.11.23. 제133호
(일부개정) 2023.03.29. 제136호
(일부개정) 2024.01.31. 제147호
(일부개정) 2024.04.24. 제154호
(일부개정) 2024.06.24. 제1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제 및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재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원) 재단에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개정 2020.03.19.>

제5조(기구) ① 재단은 경영지원본부와 복지사업본부를 두고, 본부에 속하지 않는 김해 시립요양원은 대표이사 밑에 둔다. <개정 2016.09.07, 2016.11.22, 2018.02.05., 2018.08.06., 2019.09.20., 2019.12.30., 2020.03.19., 2020.08.27., 2021.06.11., 2021.12.16., 2022.01.17., 2023.03.29., 2024.04.24.>

1.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정책감사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추모의공원, 서부청소년센터 <신설 2024.04.24.>
2. 복지사업본부: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 시니어클럽, 구산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신설 2024.04.24.>

② 재단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③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임시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04.24.>

제6조(정원) 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직위)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28, 2014.09.04, 2016.09.07, 2016.11.22, 2018.02.05., 2018.08.06., 2019.09.20., 2019.12.30., 2020.03.19., 2020.08.27., 2021.06.11., 2021.12.16., 2022.11.23., 2024.01.31., 2024.04.24.>

1. 경영지원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 선임직 또는 일반3급으로 보한다.
2. 부서장 : 일반3·4급(계약다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04.24.>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는 직원으로 보한다.

제7조의2(직원) ① 직원의 직종은 선임직,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 업무직으로 구분하며, 직렬과 직급은 [별표 4], [별표5]와 같다. <개정 2015.10.23, 2018.02.05., 2018.11.22., 2019.09.20., 2020.03.19., 2021.12.16.>

② 선임직 직원은 재단의 책임경영을 위해 본부장으로 채용된 직원을 말하며, 선임직 임용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따른다. <신설 2021.12.16.>

③ 일반직 직원은 사무, 기술 및 전문분야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근로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계약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일반직 직무라도 2년 미만의 한시적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직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⑤ 공무직 직원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나 보조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09.20.>

⑥ 업무직 직원은 국도비지원사업이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8.11.22.> <개정 2019.09.20.>

[본조신설 2014.04.28.]

제7조의3(기간제근로자) 대표이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19.>

[본조신설 2014.04.28]

제8조(선임직의 채용) 선임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를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0.03.19.>[본조신설 2021.12.16.]

제9조(권한의 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표이사 유고 또는 궐위 시 「(재)김해시복지재단 정관」 제1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03.15., 2020.03.19., 2022.10.06.>

② 삭제 <2020.03.19.>

제10조(법정대리) ① 이사장이 출장·휴가 등의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03.19.>

②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경영지원본부장, 복지사업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03.19., 2021.12.16., 2022.11.23.>

③ 본부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본부별 직제 순위에 의한 부서장 등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9.07., 2021.12.16., 2024.04.24.>

④ 부서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직제 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1.12.16.>

제11조(지정대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09.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① 경영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재단 조직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재단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복지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개발, 평가, 개선 및 반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2024.04.24.]

제4장 보 칙

제13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제14조(특명사항)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특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19.>

제15조(시행내규)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03호 2014.01.15.>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6호 2014.04.28.>

이 규정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1호 2014.09.0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3호 2015.03.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4호 2015.10.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호 2016.01.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1호 2016.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권한의 대행)의 시행일은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8호 2016.09.07.>

이규정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6.10.01.)

부칙<규정 제47호 2016.11.2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2017.01.01.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9호 2017.03.28.>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8호 2018.02.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8.03.05.)

부칙<규정 제62호 2018.08.0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8.08.22.)

부칙<규정 제65호 2018.11.22.>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0호 2019.09.2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9호 2019.12.30.>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3호 2020.03.1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9호 2020.08.27.>

이 규정은 2020. 09. 01.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2호 2021.06.1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08호 2021.12.1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5호 2022.1.17.>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3호 2022.5.3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29호 2022.10.0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3호 2022.11.23.>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6호 2023.03.2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3호 2024.01.3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3호 2024.04.2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6호 2024.06.24.>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개정2014.04.28, 2014.09.04., 2016.09.07, 2016.11.22., 2018.02.05., 2018.08.06., 2019.09.20., 2019.12.30., 2020.03.19., 2020.08.27., 2021.06.11., 2021.12.16., 2022.01.17., 2022.11.23., 2024.04.24.>

기 구 표



[별표 2 (제6조 관련)] <개정 2014.04.28, 2014.09.04, 2015.03.23, 2015.10.23, 2016.01.12., 2016.09.07, 2016.11.22., 2018.02.05., 2018.08.06., 2018.11.22., 2019.09.20., 2019.12.30., 2020.03.19., 2020.08.27., 2021.06.11., 2021.12.16., 2022.05.30., 2022.11.23. 2023.03.29., 2024.04.24.>

정 원 표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계	직종/ 직급										
			선임직		일반직						계약직 라급	공무직	업무직
			대표이사	본부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계	214	214	1	2	1	12	29	34	55	16	1	18	45
대표이사	1	1	1
경영지원본부	1	1	.	1
복지사업본부	1	1	.	1
경영지원팀	13	13	.	.	1	.	1	4	5	2	.	.	.
정감사팀	6	6	.	.	.	1	1	2	1	1	.	.	.
여성센터	20	20	.	.	.	1	2	.	1	2	.	.	14
청소년수련관	16	16	.	.	.	1	2	2	5	1	.	.	5
서부청소년센터	5	5	.	.	.	1	1	1	2
추모의원	16	16	.	.	.	1	2	1	1	.	.	8	3
노인종합복지관	25	25	.	.	.	1	4	5	3	1	1	4	6
동부노인종합복지관	20	20	.	.	.	1	3	4	5	0	.	3	4
서부노인종합복지관	23	23	.	.	.	1	3	5	6	1	.	1	6
김해시니어클럽	11	11	.	.	.	1	1	1	6	2	.	.	.
구산사회복지관	12	12	.	.	.	1	1	3	3	1	.	1	2
장애인종합복지관	24	24	.	.	.	1	4	4	10	1	.	1	3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20	20	.	.	.	1	4	2	7	4	.	.	2

[별표 3] <삭제 2018.02.05.>

[별표 4 (제7조의2 관련)] <신설 2014.04.28.> <개정 2014.09.04, 2015.03.23, 2015.10.23, 2016.01.12, 2016.09.07, 2016.11.22., 2018.02.05., 2018.08.06., 2018.11.22., 2019.09.20., 2019.12.30., 2020.03.19., 2020.08.27., 2021.06.11., 2021.12.16., 2022.05.30., 2022.11.23., 2023.03.29., 2024.04.24., [2024.06.24.](#)>

직급·직종(군)별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 급	정원	선임직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행정 /기술	행정	기술			
총 계	214	3	13	30	104	1	18	45
선임직	3	3
일반3급 - (계약나급)	1	.	1
일반4급 (계약다급)	12	.	12
일반5급	29	.	.	6	23	.	.	.
일반6급	34	.	.	8	26	.	.	.
일반7급	55	.	.	13	42	.	.	.
일반8급	16	.	.	3	13	.	.	.
계약라급	1	1	.	.
공무직	18	18	.
업무직	45	45

[별표 6 (제12조제3항 관련)] <신설 2024.04.24.>

사무분장표

[경영지원본부]

구 분	분 장 사 무
경영지원팀	1. 문서 및 직인관리 사항 2. 임·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 사항 3.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예산편성, 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단규개정에 관한 사항 7. 경영평가 및 혁신전략 업무에 관한 사항 8. 복지재단 재산에 관한 사항 9.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10. 일반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1. 세입세출 예·결산에 관한 사항 12. 법인 신용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각종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14. 지정금고 계약 및 자금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등에 관한 사항 16.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7. 타부서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정책감사팀	1. 사회복지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 보급 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사업 4. 장단기 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6. 업무 계획 및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여성센터	1. 여성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여성복지와 관련한 사항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청소년수련과 관련한 사항
서부청소년센터	1. 서부청소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청소년 활동·복지와 관련한 사항
추모의 공원	1. 추모의 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화장과 관련한 사항

[복지사업본부]

구 분	분 장 사 무
노인 종합복지관	1. 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
동부노인 종합복지관	1.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
서부노인 종합복지관	1.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항
김해 시니어클럽	1. 김해시니어클럽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사항
구산 사회복지관	1. 구산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항
장애인 종합복지관	1.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목욕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항
서부장래인 종합복지관	1.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서부지역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항